

[대리청구인지정서비스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]

1. 보험의 종류

일반 - 제도성 특별약관

2. 보험종목의 명칭 등

대리청구인지정서비스 특별약관

3. 대상 계약

대리청구인지정서비스 특별약관(이하 “특약”이라 한다.)은 대상상품 목록(<별표> 참조)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함.

4. 대리청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의 경우, 보험계약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 할 수 있음.
- 2)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 - (1)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
 - (2)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. 단,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.
- 3) 보험계약자는 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.
 - (1) 대리청구인 지정(변경) 신청서(회사양식)
 - (2) 보험계약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)
 - (3)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 단,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의 경우 제출하지 않는다.
 - (4)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. 단,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의 경우 제출하지 않는다.

5. 기타

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름.

<별표> 대상상품 목록

상품명
다이렉트늘안심입원비보험(II)

【별첨】

대리청구인 지정(변경) 신청서

본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는 질병(치매 등)이나 사고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,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(대리청구인)을 미리 정하는 서류입니다.

1) 대리청구인을 지정(변경)하시겠습니까? (☑ 표시)

☐ 대리청구인 신규 지정		☐ 대리청구인 변경			
공통	☐ 무기명 지정*	구 분	피보험자와 관계		
		지 정	(예시)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, 자녀 등		
	☐ 기명 지정	구 분	성 명	주민등록번호	피보험자와 관계
		대 표			
		2순위			

* 무기명 지정 시,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청구할 경우 보험수익자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 지급된 보험금은 은행의 ‘거동불편 예금주’ 제도를 통하여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의 요청에 따라 병원 등에 치료비 결제 목적 등으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은행이 치료비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합니다.

2) 1)번 문항에서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을 경우 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”으로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기본 지정됩니다.

3) 1)번과 2)번 문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 지정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, 아래의 유의사항을 덧쓰기한 후 대리청구인 미지정이 가능합니다. 대리청구인 미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아래 유의사항을 덧쓰기하여 주십시오.

무기명 또는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질병(치매 등) 발생 시 대리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.

작성일자 : 년 월 일

본인 : (서명/날인)

법정대리인 : (서명/날인)

<작성안내>

1)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 범위 : ①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, ②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. 단,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.

2) 무기명 지정 시 약관 제3조 제1항 제4호의 서류(가족관계등록부 등)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